|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응급의학회, 원격화상 의료지도 ‘시기상조’**  |
| 메디컬투데이 2010-04-20 07:45:48 발행  |    |

 |  |
| line |

 |
|  |
|  |
|  |
| **법제도 인프라 및 프로토콜 등 기반 부족 지적**［메디컬투데이 임주희 기자］ 최근 개별 병원별로 진행되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원격화상 의료지도 시스템’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이하 응급의학회)가 공식 입장과 함께 문제점을 제기했다.응급의학회는 소방방재청에서 중환자용 구급차 배치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일반 병의원에 화상 원격정보 수신 장비를 배치하고 운영함에 대해 실제적인 의료지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 없이 수행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의료지도 시행을 위해서는 프로토콜의 정비와 구급대원 및 의료지도의사의 교육, 의료지도에 관련된 질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가 없이 진행돼 실제 의료지도가 이루어 졌을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응급의학회 곽영호 총무이사는 19일 “원격영상을 이용해서 의료지도를 하려면 우선 구급대원과 의사 모두 교육이 필요하고 사전에 합의된 내용인 프로토콜을 정비해야한다”며 “ 법적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곽 총무이사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과 TFT를 만들어 진행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 여부에 관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에 소방방재청은 응급의학회에서 제기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TFT를 통해 협의하며 응급의학회의 입장을 100%수용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응급의학회에서 제기한 법제도 인프라가 현재 원격화상에 관련된 부분이 원격의료의 법률에 해당되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해당 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와 응급의학회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그는 “원격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이 단순히 환자 이송 시 응급 처치를 위함이 아닌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도 크다”며 “이 외에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TFT를 통해 협의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예산은 소방방재청에 지원됐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응급의학회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